

「군포도시공사 사회적가치평가」 운영내규를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발령한다.

군포도시공사  원 명 회

2020년 12월 1일

군포도시공사 내규 제39호

## 군포도시공사 사회적가치평가 운영내규

제정 2020.12.1.

**제1조(사회적가치평가 목적)** 이 내규는 군포도시공사 정관, 규정, 내규 및 지침에 내재하는 사회적가치 저해요인을 입안단계부터 점검·정비하여 사회적가치 저해요인을 사전 차단하여 사회적가치 구현업무의 효과적인 추진기반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회적가치 및 평가 정의)** 이 내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회적가치」는 사회·경제·환경·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를 말한다.
2. 「사회적가치평가」는 군포도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규정·내규에 내재하는 사회적가치 저해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하여 개선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
3. 「운영부서」는 사회적가치 업무를 수행하는 경영기획부를 말하며, 「평가부서」는 사회적가치 저해요인을 평가하는 「청렴감사팀」을 말한다.
4. 「사업부서」는 직제규정에 따라 군포시의 대행사업을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사회적가치평가 대상)** 사회적가치평가 대상은 공사 정관·규정·내규 및 지침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회적가치평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평가를 실시하지 않는다.

1. 법령 또는 정관, 정부방침, 다른 규정의 변경으로 규정·내규를 제·개정하는 경우
2.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감독기관)의 지침·권고 등에 따라 규정·내규를 제·개정하는 경우
3. 간단한 자구의 수정·삭제 또는 용어의 변경 등 개정 내용이 경미한 규정·내규의 제·개정
4. 위임전결, 업무분장, 문서, 차량관리 등 내용에 있어 사회적가치평가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규정·내규의 제·개정

**제4조(사회적가치평가 의뢰)** 규정·내규를 제·개정하고자 하는 운영부서와 사업부서는 평가부서와 협의하여 사회적가치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제5조(사회적가치평가 실시)** ① 제4조에 따른 사회적가치평가 의뢰를 받은 평가부서는 의뢰 받은 규정·내규에 대하여 평가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② 평가부서는 운영부서와 사업부서에 사회적가치평가에 필요한 자료 제출 및 업무지원을 요구할 수 있다.  
③ 평가부서는 자체적으로 평가를 수행하며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 및 운영부서와 협의·요청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기관에도 협의·요청하여 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  
④ 평가부서는 사회적가치평가 결과를 의뢰한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평가부서는 운영부서 및 사업부서의 의뢰없이 자체적으로 사회적가치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⑥ 사회적가치평가의 체크리스트는 별지로 관리한다.

**제6조(사회적가치평가 재심청구)** 운영부서 및 사업부서는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그 사유를 첨부하여 평가부서에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사회적가치평가 기타사항)** 이 내규에서 정한 것 외의 세부사항은 평가부서에서 따로 정한 것에 따른다.

## 부 칙

이 내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경영기획부
입 안 자	직 성 명	경영기획부장 이 현 동
	담당 성명 (전화번호)	황 기 성 (390-7606)

[별지 제1호서식]

## 사회적가치평가 의뢰 요청서

규정명 (규정·내규·지침 등)	(평가 실시를 의뢰하는 규정·내규·지침 등)		
법령명	(평가하고자 하는 내부 규정 등의 상위법령이 있는 경우만 기재)		
의뢰부서		의뢰담당자	
현 행	제·개정안	제·개정 사유	
○ 별도 불임자료 : ① 제·개정안(신·구 조문 비교표 포함) ② 필요한 경우 사회적가치평가에 대한 검토의견 및 관련자료			
20      년      월      일			
확인부서명(팀명) :		확인자 :	

[별지 제2호서식]

## 사회적가치평가 결과 통보서

규정명 (규정·내규·지침 등)				
평가담당	소속		성명	
의뢰부서			의뢰담당자	
관련조문	검토결과		조치사항	
• 의뢰 조문 및 관련 법령·조례· 규정 등을 기재	• 검토내용 기재		• 개선요구 등 결과 후속조치 기재	
○ 사회적가치평가 결과 :				
20 년 월 일				
확인부서명(팀명) :			확인자 :	

## [별지 제3호서식]

## 사회적가치평가 체크리스트

유형별 체크

업무유형	확인사항	존재여부
인권보호	헌법으로 보장되는 기본권 보장과 관련된 조항이 존재하는가?	예□ 아니오□
재난안전	시민안전, 재난대응,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유지 등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조항이 존재하는가?	예□ 아니오□
노동권보장	노동3권, 근로자의 삶의 질 제고 등과 관련된 조항이 존재하는가?	예□ 아니오□
사회통합	여성, 노인, 청소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채용 확대, 공정채용 등 사회적 약자의 존엄과 가치 보장과 관련된 조항이 존재하는가?	예□ 아니오□
상생협력	협력업체와의 동반성장, 갑질문화 타파 등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조항이 존재하는가?	예□ 아니오□
일자리창출	민간·공공부문 일자리창출, 일자리 나누기, 노동이사제, 비정규직 축소 등 좋은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조항이 존재하는가?	예□ 아니오□
공동체복원	사회적 경제조직 협업 및 성장지원, 제트리피케이션 예방 등 지역공동체와 관련된 조항이 존재하는가?	예□ 아니오□
지역경제공헌	도시재생뉴딜, 지역사회공헌,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위한 지역경제육성, 수도권 과밀화로 인한 부작용 해소 등과 관련된 조항이 존재하는가?	예□ 아니오□
윤리경영	윤리경영 실천, 시민신뢰 확보, 사회적 책임 이행 등과 관련된 조항이 존재하는가?	예□ 아니오□
지속가능환경	친환경 주택 및 도시개발, 온실가스 감축 등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보장과 관련된 조항이 존재하는가?	예□ 아니오□
시민참여	열린혁신, 사업추진 및 평가과정에서의 국민참여 확대와 관련된 조항이 존재하는가?	예□ 아니오□